

## 한의과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규정

제정 2016. 08. 30.

제2차 개정 2024. 11. 20.

**제1조(명칭)** 위원회는 한의과대학교육과정혁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보편적 지식과 학업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8.11.23., 2024.11.20.)

**제3조(소재)**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내에 둔다. (개정 2018.11.23)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8.11.23., 2024.11.20.)

1. 한의학 교육 정책의 수립(개정 2024.11.20.)
2.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·개편·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 2024.11.20.)
3.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 2024.11.20.)
4. 교육과정 개편에 관련된 실무팀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(개정 2024.11.20.)
5.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(개정 2024.11.20.)

**제4조2(독립성)**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,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.(신설 2024.11.20.)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한의학과 학과장, 한의예과 학과장, 한의학교육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전임교원, 산업체인사 및 학생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8.11.23., 2024.11.20.)

② 위원장은 한의과대학장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(개정 2018.11.23., 2024.11.20.)

③ 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8.11.23)

**제6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 단, 학생위원은 1년으로 한다. (개정 2018.11.23)

**제7조(연구원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**제8조(회의 및 의결)**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예산지원)** 위원회는 소정의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18.11.23)

**제10조(운영세칙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칙**(기획예산부-671, 2016.08.30)

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(기획예산팀-581, 2018.11.23)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(기획예산팀-2476, 2024.11.20)

이 규정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